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56

발의연월일: 2022. 4. 1.

발 의 자: 강병원·고민정·오영환

윤관석 • 양향자 • 유동수

김두관 · 최종윤 · 윤영찬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 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 또한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함.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 확보 방식은 지역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를 원하는 사람이 각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개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

용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와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정보연계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민원량 분산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주택금융부채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부칙 제4조).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출금액, 그 밖에"를 "대출금액 등"으로, ""금융정보"라"를 "'금융정보등"이라"로, "금융정보등"을 "금융정보등을"로 한다.

제96조의2의 제목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회사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로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한다.

제96조의2제3항 본문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의3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을 "제72조제1항"으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2022년 9월분 보험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1)~(2)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1)~(2)(생략) (현행과 같음)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3)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 융실명거래 <u>및 비밀보장에</u>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 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 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에 대한 자료 · 정보 중 대출 법률 |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정보(이하 "금 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 대출금액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 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 보등"이라 -----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 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 금융정보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제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 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u>금융정보의</u> 제공을 요청받은 <u>금융회사등</u>의 장은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u>금융정보를</u>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96조의2(<u>금융정보등</u>)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u>법률」</u>
<u>「신</u>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
<u>기관등"이라 한다)</u> <u>금</u>
<u> 용정보등을</u>
,
② <u>금융정보등의</u> -
<u>금융기관등</u>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u>금융정보등을</u>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 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세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 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 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

•		
③	금융정	보등을 -
금융기관	<u>=</u>	- <u>금융정</u>
보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7	7항, 제35
조의3 및 「금	구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4		
	급융성	<u> </u>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 2조제1항----- 2022 년 9월분 보험료-----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	
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
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